

인천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68612 판결 [보증금반환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8.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가소473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원이 납부한 비용

소송구조변호사 선임비용, 이 사건 전체 인지대, 송달료 법원이 납부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 2)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나. 인정사실

-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제1심법원은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2. 7. 27. 위 임대차보증금 11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달 28.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 1)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소송비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서,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또, ①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항소를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또는 부대항소의 제기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원고가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던 점,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부대항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항소는 부적법하고, ② 원고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혜인, 판사 전솔이